

## 기계·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

[ ] 최초 [ ] 정기 [ ] 구조변경

|      |      |      |  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20일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|
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 | 상호(명칭)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 |
|     | 주소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|

기계·기구 설치주소 (전화번호: )

|           | 명칭 | 형식 | 제작회사 | 제작번호(제작연월) |
|-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
| 기계·기구의 표시 |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

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
| 검사희망일 | 종전검사일 |
|-------|-------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|      |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(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      | 수수료             |
|      | 2.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(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 |                 |
|      | 3.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(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|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금액 |
|      | 4. 변경된 내용(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# 유의사항

- 기계·기구는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3항).
-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2조제3호).